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축산물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미실시

기 관 명 충청남도, 당진시, 아산시, 천안시

내 용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9조(출입·검사·수거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(영업장의 출입·검사·수거)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7조,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,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.

따라서 해당 관서에서는 행정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등의 이행결과를 보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 충청남도 11개 시·군(논산시, 홍성군, 서천군, 금산군 제외¹⁾)에서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관내 축산물판매업체,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56개 업소에 대한

1) 감사원 감사 수감으로 정부합동감사대상에서 제외

출입·검사·수거 등 사후관리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

사후관리 대상 업소 총 56개소 중 49개 업소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실시한 반면, 충청남도(축산과), 당진시(축산과), 아산시(축수산과), 천안시(축산과)에서는 아래 [표]와 같이 7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일로부터 6개월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현재까지도(감사기간 중 5개 업소 점검 실시)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] 행정처분 업소 6개월 이내 출입검사 등 미이행 내역

연번	처분기관	처분일자 등	처분유형	업종	업체명	위생검사 실시여부	비고
1	본청	2015.04.27	품목재조정지	축산물가공업	○○○○ ○○○	미실시	-
2	당진시	2014. 10. 18*	영업정지	축산물판매업	○○○○○	미실시	-
3	아산시	2017.01.24	과징금부과	식육포장처리업	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	3개월24일 지연	감사기간중 실시 (2017. 11. 17.)
4	천안시	2014. 11. 07*	영업정지	축산물판매업	○○○○ ○○○	30개월13일 지연	감사기간중 실시 (2017. 11. 20.)
5		2016.07. 15	품목재조정지	식육포장처리업	주○○○○○ ○○○	10개월5일 지연	
6		2016.08.31	과징금부과	축산물판매업	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	8개월20일 지연	
7		2017.2. 10*	영업정지	식육포장처리업	○○○○○	3개월7일 지연	감사기간중 실시 (2017. 11. 17.)

*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, 당진시장, 아산시장, 천안시장은

[주의]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